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도시 기본계획수립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제1항중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후 개최한다”를 “도시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개최한다”로 한다.

제10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 제출자에게 시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항 제3, 6, 7호의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기반시설”로 한다.

제1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법 제22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이 제안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으로 입안시 주민의견을 청취 할 때에 영 제22조제2항에 추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계획입안에 포함되는 당해 부지내의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단, 도시계획재정비등 방대한 도시계획은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제외한다) 이 경우 당해 주소지에 거주 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일간 신문등의 공고 또는 공람기간 동안 구미시청 홈페이지의 게재로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3조(재공람 공고)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공고한 내용중 주민 의견 청취결과 제출된 의견내용이 타당하여 도시계획입안에 반영함으로써 입안 내용이 현저히 변경되어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다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재공람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제2항중 “6개월 이내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 결정

요청"을 "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요청"으로 하며 제3항중 "제2항의 결정"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하며 "기간동안"을 "제한기간동안"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0조의 제2, 3호중 "20분의 1"을 각각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22조중 "영 제47조제1호, 제2호"를 "영 제47조제1호 내지 제5호"로 하며 제1호의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농지안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으로 한다.

제23조중 "적치대상토지"를 "허가대상"으로 한다.

제24조 제1항의 "㉠"을 삭제하며 제1호의 "제29조"를 "제30조"로 한다.

제29조 제1항의 "㉠"을 삭제한다

제3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50조 별표 1 제1호 다목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적합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녹지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시 적용한다

1. 흉고 6센티미터이하의 치수는 제외하고 조립목을 포함하는 입목본수도가 60 퍼센트미만인 토지로 하며 입목본수도 산정기준은 별표18에 의한다.
2. 경사도가 35퍼센트미만인 토지.
3. 표고 120미터미만인 토지(다만, 형질변경대상 토지가 도로와 접하거나 객관적으로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표고 150미터미만까지 허용)

제32조 본문중 "각호의 조치"를 "각호의 안전조치"로 하며, 제1호의 "절벽면"을 "절개면"으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서 지하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한 배수공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6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급수시설의 묻는 깊이는 1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장물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얼거나 파손에 대비한 보온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배수관의 묻는 깊이는 1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피한 경우

에는 파손에 대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조 제3항의 “미관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의 미관심의”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 및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의 도로쪽 20미터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제1항중 “층수와 높이”를 “층수 또는 높이”로 한다

제56조 제3호의 “(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를 “(공연장, 전시장, 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 동·식물원중 식물원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62조 제1항 본문의 “15인이상 20인이내로 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을 제4항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5인이상 20인이내로 구성한다”로 하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공무원인 위원은 의회의원 2인, 도시계획담당국장, 교육청 학교담당과장으로 한다.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로 한다. 다만, 주민등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제안 관련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회의 결과에 대하여는 회의록이 작성되어 위원장의 인준을 받은 후 회의록은 비공개 보관한다. 다만, 회의결과는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69조중 “작성하여 차기회의에”를 “작성하며 자문 또는 심의된 내용의 처리결과를 차기회의에”로 한다.

제71조 제1항의 “기획단”을 “상임기획단”으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단장 및 간사위원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하며 연구위원은 도시계획관련 전문가로 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위촉 및 임기) 기획단의 연구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하며 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7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중 제목의 “시행세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3, 4, 5]의 제1호차목의 “주유소”를 “주유소·석유판매소”로 한다.

[별표 8]의 제1호나목의 “제1호 가목”을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 9】 제1호 가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미시토지분할허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 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조 ~ 제5조 (생략)	제1조 ~ 제5조 (현행과 같음)	제1조 ~ 제5조 (개정안과 같음)
제6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이하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이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할 경우에는 별도의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7조 (생략)	제7조 (현행과 같음)	제7조 (개정안과 같음)
제8조(공청회의 개최시기)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후 개최한다.	제8조(공청회의 개최시기) ①----- -----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개최한다.	제8조(공청회의 개최시기)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9조 (생략)	제9조 (현행과 같음)	제9조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0조(도시기본계획의 주민의견 반영 등) ① (생략)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한 경우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공보 또는 구미시청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도시기본계획의 주민의견 반영 등) ① (현행과 같음) <u><삭제></u> ③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제출자에게 시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도시기본계획의 주민의견 반영 등) ①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11조(도시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및 절차등) ① (생략) 1, 2호 (생략) 3.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4, 5호 (생략)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제11조(도시계획의 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및 절차등) ① (현행과 같음) 1, 2호 (현행과 같음) 3. ----- 도시기반시설----- ----- ----- 4, 5호 (현행과 같음) 6. 도시기반시설----- ----- -----	제11조(도시계획의 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및 절차등) ① (개정안과 같음) 1, 2호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5호 (개정안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추정안
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 8, 9, 10호 (생략) ②, ③ (생략) 제12조(도시계획입안시 주민의견 청취) ①법 제22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입안에 포함되는 당해 부지내의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일간신문등의 공고 또는 공람기간 동안 구미시청홈페이지의 게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생략)	7. 도시기반시설----- ----- ----- 8, 9, 10호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도시계획입안시 주민의견 청취) ①법 제22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이 제안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으로 입안시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 영 제22조제2항에 추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계획입안에 포함되는 당해 부지내의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 도시계획재정비등 방대한 도시계획은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제외한다) 이 경우 당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일간신문등의 공고 또는 공람기간동안 구미시청 홈페이지의 게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7. (개정안과 같음) 8, 9, 10호 (개정안과 같음) ②, ③ (개정안과 같음) 제12조(도시계획입안시 주민의견 청취)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3조(재공람 공고) ①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공고한 내용중 주민의견 청취결과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중요한 변경사항이라 함은 제24조제3항 및 제4항제1호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②기타 입안내용에 대한 의견내용이 타당하여 반영하므로써 입안내용이 현저히 변경되어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다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공람 공고를 할 수 있다.	제13조(재공람 공고)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공고한 내용중 주민의견 청취결과 제출된 의견내용이 타당하여 도시계획입안에 반영함으로써 입안내용이 현저히 변경되어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다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재공람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공람 공고) (개정안과 같음)
제14조(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① (생략) ② 제1항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 결정요청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결정 또는 결정요청을 절차상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건축허가의 제한을 건축법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계속할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요청-----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 ----- ----- -----제한기간동안----- -----	제14조(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5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 (생략) ② <u>도시계획사업</u>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하여 구미시에 무상귀속한 공공시설외의 도시계획시설은 그 시설을 설치한 자가 유지관리한다.	제15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u>도시계획시설사업</u> ----- ----- ----- -----	제15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16조~제19조 (생략)	제16조~제19조 (현행과 같음)	제16조~제19조 (개정안과 같음)
제20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 본문 (생략) 1. (생략) 2. 가구 및 획지 면적의 <u>20분의 1</u> 이내의 변경 3. 건축물 높이의 <u>20분의 1</u> 이내의 변경	제20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 본문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u>100분의 10</u> ----- ----- 3. ----- <u>100분의 10</u> -----	제20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 본문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제21조 (생략)	제21조 (현행과 같음)	제21조 (개정안과 같음)
제22조(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는 영 제47조제1호, 제2호를 포함한 다음 각호로 한다. 1. <u>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u> 2. (생략)	제22조(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영 제47조제1호 내지 제5호----- ----- 1. <u>농지안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u> 2. (현행과 같음)	제22조(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추정안
제23조(허가절차)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u>적치대상토지</u>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물건의 적치행위, 토석채취 및 토지의형질변경허가는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23조(허가절차) ----- ----- <u>허가대상</u> ----- ----- ----- -----	제23조(허가절차) (개정안과 같음)
제24조(개발행위의 허가제한) ① 본문 (생략) 1. 본 조례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지역 2. (생략)	제24조(개발행위의 허가제한) <삭제> 본문 (현행과 같음) 1.-----제30조----- ----- 2. (현행과 같음)	제24조(개발행위의 허가제한) <삭제> 본문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제25조~제28조 (생략)	제25조~제28조 (현행과 같음)	제25조~제28조 (개정안과 같음)
제29조(행위허가의 취소등) ① (생략)	제29조(행위허가의 취소등)<삭제> (현행과 같음)	제29조(행위허가의 취소등) <삭제> (개정안과 같음)
제30조(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생략) ① (생략) 1~8호 (생략) ②영 제50조 별표1 제1호 다목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적합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0조(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1~8호 (현행과 같음) ②영 제50조 별표1 제1호 다목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적합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녹지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시 적용한다.	제30조(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개정안과 같음) ① (개정안과 같음) 1~8호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치수(높고 6센티미터이하)를 제외한(조림목 제외) 임목본수도 60퍼센터미만인 토지로 하며 임목본수도 산정기준은 별표 18에 의한다.	1. 높고 6센티미터이하의 치수는 제외하고 조림목을 포함하는 임목본수도가 60퍼센터미만인 토지로 하며 임목본수도 산정기준은 별표 18에 의한다.	1.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주정안
2. 경사도가 25도미만인 토지 3. 표고 200미터미만인 토지(다만, 형질변경대상 토지가 전·답·도로등으로 연결되어 객관적으로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표고 200미터이하까지 허용) 제31조 (생략) 제32조(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안전조치) 영 제50조 별표1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촉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6호 (생략) 〈신 설〉 제33조~제35조 (생략)	2. 경사도가 30퍼센트미만인 토지 3. 표고 100미터미만인 토지(다만, 형질변경대상 토지가 도로와 접하거나 객관적으로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표고 150미터미만까지 허용) 제31조 (현행과 같음) 제32조(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안전조치) ----- ----- ----- -----<u>각호의 안전조치</u>----- 1. ----- -----<u>절개면</u>----- ----- ----- 2~6호 (현행과 같음) 7.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서 지하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한 배수공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3조~제35조 (현행과 같음)	2. 경사도가 35퍼센트미만인 토지 3. 표고 120미터미만인 토지(다만, 형질변경대상 토지가 도로와 접하거나 객관적으로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표고 150미터미만까지 허용) 제31조 (개정안과 같음) 제32조(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안전조치)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6호 (개정안과 같음) 7. (개정안과 같음) 제33조~제35조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6조(급수시설의 설치) (생략) 1, 2호 (생략) 3. 급수시설은 <u>얼어서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토양이 얼지 아니하는 깊이이상으로</u> 이를 묻거나 덮게등 보호조치를 하여야한다.	제36조(급수시설의 설치) (현행과 같음) 1, 2호 (현행과 같음) 3. 급수시설의 묻는 깊이는 1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장물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u>얼거나 파손에 대비한 보온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u>	제36조(급수시설의 설치) (개정안과 같음) 1, 2호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제37조(배수시설의 설치) (생략) 1~7호 (생략) 8. 배수관의 묻는 깊이는 동결선 1미터이상이어야 한다. 9. (생략)	제37조(배수시설의 설치) (현행과 같음) 1~7호 (현행과 같음) 8. 배수관의 묻는 깊이는 1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파손에 대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현행과 같음)	제37조(배수시설의 설치) (개정안과 같음) 1~7호 (개정안과 같음) 8. (개정안과 같음) 9. (개정안과 같음)
제38조~제47조 (생략)	제38조~제47조 (현행과 같음)	제38조~제47조 (개정안과 같음)
제48조(용도제한) ① ② (생략)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등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u>미관심의를</u>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48조(용도제한)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도시 계획위원회의 미관심의-----	제48조(용도제한)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신설></u>	④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주된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띄워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 및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의 도로폭 15미터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주된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띄워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 및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의 도로폭 20미터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제51조 (생략) 제52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적용) ①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층수와 높이 규제중 낮은 규정에 맞는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3조~제55조 (생략) 제56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본문 (생략) 1, 2호 (생략)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20호 (생략)	제49조~제51조 (현행과 같음) 제52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적용) ①----- -----층수 또는 높이-----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제55조 (현행과 같음) 제56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본문 (현행과 같음) 1, 2호 (현행과 같음) 3. -----(공연장의 연예장·음악당, 전시장 및 식물원, ----- -----공회당-----) 4~20호 (현행과 같음)	제49조~제51조 (개정안과 같음) 제52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적용)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53조~제55조 (개정안과 같음) 제56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본문 (개정안과 같음) 1, 2호 (개정안과 같음) 3. -----(공연장, 전시장, 집회장의 공회당·회의장, 동·식물원중 식물원은 제외한다) 4~20호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57조~제61조 (생략)	제57조~제61조 (현행과 같음)	제57조~제61조 (개정안과 같음)
제62조(구성) ① <u>법 제85조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0인이내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을 제4항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 한다.</u> ② <u>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u> ③ <u>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도시건설국장과 의회의원 2인이상으로 한다.</u> ④ <u>공무원 또는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토지이용·교통·환경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 ⑤ (생략)	제62조(구성) ①----- ----- 15인이상 20인이내로 구성한다. 〈삭제〉 ③ <u>공무원인 위원은 도시계획담당국장, 교육청 학교담당과장으로 한다.</u> 〈삭제〉 ⑤ (현행과 같음)	제62조(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삭제〉 ③ <u>공무원인 위원은 의회의원 2인, 도시계획담당국장, 교육청 학교담당과장으로 한다.</u> 〈삭제〉 ⑤ (개정안과 같음)
제63조~제67조 (생략)	제63조~제67조 (현행과 같음)	제63조~제67조 (개정안과 같음)
제68조(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결과의 공개) ① <u>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u>	제68조(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결과의 공개) ① <u>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로 한다. 다만, 주민등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제안 관련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u>	제68조(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결과의 공개) ①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②회의결과에 대하여는 회의록이 작성되어 위원장의 인준을 받은후 구미시청 홈페이지 등에 익명으로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69조(회의록)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0조 (생략) 제71조(설치 및 기능) ①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③ (생략)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이내의 전임공무원과 3명이내의 비전임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생략) 제72조 (생략)	②회의결과에 대하여는 회의록이 작성되어 위원장의 인준을 받은후 회의록은 비공개보관한다. 다만, 회의결과는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69조(회의록) ----- 작성하며 자문 또는 심의된 내용의 처리 결과를 차기회의에----- ----- 제70조 (현행과 같음) 제71조(설치 및 기능) ①----- ----- -----상임기획단----- ----- ② ③ (현행과 같음) ④단장 및 간사위원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하며 연구위원은 도시계획관련 전문가로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72조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69조(회의록) (개정안과 같음) 제70조 (개정안과 같음) 제71조(설치 및 기능) ① (개정안과 같음) ②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제72조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73조(임용 및 복무)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73조(위촉 및 임기) 기획단의 연구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하며 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7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위촉 및 임기) (개정안과 같음)
제74조~제75조 (생략)	제74조~제75조 (현행과 같음)	제74조~제75조 (개정안과 같음)
제76조(시행세칙) (생략)	제76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제76조(시행규칙) (개정안과 같음)
【별표 1】 ~ 【별표 2】 (생략)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 제51조제1항제3호 관련) 1호 (생략) 가목~자목 (생략)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에 한한다) 카목~파목 (생략)	【별표 1】 ~ 【별표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 제51조제1항제3호 관련) 1호 (현행과 같음) 가목~자목 (현행과 같음) 차, ----- -----주유소·석유판매소----- ----- -----) 카목~파목 (현행과 같음)	【별표 1】 ~ 【별표 2】 (개정안과 같음)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 제51조제1항제3호 관련) 1호 (개정안과 같음) 가목~자목 (개정안과 같음) 차, (개정안과 같음) 카목~파목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 제51조제1항제4호 관련) 1호 (생략) 가목~자목 (생략)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u>주유소</u>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에 한한다) 카목~파목 (생략)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 제51조제1항제5호 관련) 1호 (생략) 가목~자목 (생략)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u>주유소</u>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에 한한다) 카목~파목 (생략)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 제51조제1항제4호 관련) 1호 (현행과 같음) 가목~자목 (현행과 같음) 차,----- -----<u>주유소·석유판매소</u>----- ----- -----) 카목~파목 (현행과 같음)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 제51조제1항제5호 관련) 1호 (현행과 같음) 가목~자목 (현행과 같음) 차,----- -----<u>주유소·석유판매소</u>----- ----- -----) 카목~파목 (현행과 같음)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 제51조제1항제4호 관련) 1호 (개정안과 같음) 가목~자목 (개정안과 같음) 차, (개정안과 같음) 카목~파목 (개정안과 같음)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 제51조제1항제5호 관련) 1호 (개정안과 같음) 가목~자목 (개정안과 같음) 차, (개정안과 같음) 카목~파목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별표 6】 ~ 【별표 7】 (생략)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영 제51조제1항제8호 관련) 1호 (생략) 가목 (생략)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다목~자목 (생략) 【별표 9】 ~ 【별표 18】 (생략) 부 칙	【별표 6】 ~ 【별표 7】 (현행과 같음)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영 제51조제1항제8호 관련) 1호 (현행과 같음) 가목 (현행과 같음) 나. -----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9 제1호가목----- ----- 다목~자목 (현행과 같음) 【별표 9】 ~ 【별표 18】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구미시 토지분할허가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6】 ~ 【별표 7】 (개정안과 같음)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영 제51조제1항제8호 관련) 1호 (개정안과 같음) 가목 (개정안과 같음) 나. (개정안과 같음) 다목~자목 (개정안과 같음) 【별표 9】 ~ 【별표 18】 (개정안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개정안과 같음)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u>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u>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개정안과 같음)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u>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u>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